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수 산 업 · 어 촌 공 익 기 능 증 진 을
위 한 직 접 지 불 제 도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신청·선정·지급 절차, 관리기관 지정·운영 등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함(제5조제1항)

나.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범위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2, 제11조의3)

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범위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4, 제11조의5)

라.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리기관,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19조, 제20조, 제2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9. ~ 12. 19.)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 없음

4) 법제처 심사 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5세”를 “60세”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① 법 제4조제5호 및 법 제18조의2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소규모어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지불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를 말한다.

1.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 5톤 미만의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한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 총톤수 5톤 미만의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말한다.
3.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인. 다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신고어업인이 「수산업법」 제8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어업면허,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업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권 면허를 가진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의 미만인 경우
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의 미만인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가진 어업인은 제외한다.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7.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신고어업인이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연간 수산종자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간 수산종자 판매액의 미만인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인

② 단일 어가가 제1항 각 호에 복수로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요건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제11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표 4에 따른 그 밖에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해당 어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2. 제11조의2제1항의 제3호 또는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해당 어업신고를 한 어촌지역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어촌지역 거주기간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6과 같다.

④ 영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허가어선의 전체 톤수 합계가 5톤 이상인 경우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어업총수입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총수입 이상인 경우

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의무이행, 어가단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4(어선의 범위)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허가를 가진 어선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3.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법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표 7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6과 같다.

③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의무이행, 어선원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지방해양수산청

5.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지방해양수산청

제2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영 제14조제2호”를 각각 “영 제11조2제1항, 제11조5제1항, 제14조제2호”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의3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의5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
무

별표 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제8조·제41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를 “제8조·제41조·제47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제11조”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관한”을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중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를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 중 “신고자료”를 “신고자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표에 제22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같은 법 제
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에 관한 자료

22.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23.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제21
조에 따른 어선 위치통지 자료

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정보 및 제49조 어선보험가입자 정보

25. 「어장관리법」 제9조 어장휴식, 제11조의2 어장환경평가 및 제14조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등에 관한 자료
26.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 자료
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3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32. 그 밖에 법 제23조제2항에 다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에 준수사항(제11조의3제1항 관련)

1. (공통)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에 준수사항

- 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선 또는 신청인 개인의 일일 어획량, 지급대상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할 것
- 나.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선, 양식장 또는 어업인의 위판, 판매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할 것
- 다. 수산 관계 법령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투기나 폐기를 하지 말 것
- 라. 폐어구 또는 폐시설물 회수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 마. 해양 또는 해안 쓰레기 수거에 적극 참여할 것
- 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해양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생태계의 보전 또는 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한 어촌공동체의 공동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
- 사. 수산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산물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 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조치를 준수할 것

2. (양식업)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에 준수사항

- 가. 양식장 약품사용 기준을 준수할 것
- 나. 양식시설 기준을 준수할 것
- 다.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의 관리의무 및 제13조에 따른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를 다할 것
- 라. 수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판매단계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기준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 5]

어촌지역 거주기간 산정기준(제11조의3제2항제3호 관련)

1. 어촌지역 거주기간 산정기준

가. “어촌지역”이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란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가 어촌지역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질병의 치료·요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어촌지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어촌지역 거주기간 산정의 세부기준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6]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제11조의3제3항, 제11조의5제3항
관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가. 소규모어가 또는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나. 소규모어가 또는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원 미만일 것

2. 제1호에 따른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7]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1조의5제1항 관련)

1.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 가. 수산 관계 법령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투기나 폐기를 하지 말 것
- 나. 폐어구 또는 폐시설물 회수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 다. 해양 또는 해안 쓰레기 수거에 적극 참여할 것
- 라. 해난구조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
- 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해양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생태계의 보전 또는 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한 어촌공동체의 공동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기준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 ----- ----- ----- 60세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①</u> <u>법 제4조제5호 및 법 제18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소규모어가”란</u> <u>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지불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를 말한다.</u> <u>1.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u>		

제1항에 따른 총톤수 5톤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한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 총톤수 5톤 미만의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말한다.

3.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인. 다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신고어업인이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면허,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업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권 면

허를 가진 어업인으로서 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연간 양식수
산물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의 미만인
경우

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
의 직전연도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양식수
산물 판매액의 미만인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가진 어
업인은 제외한다.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
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7.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
항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어
업인. 다만, 소규모어가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는 신고어업
인이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1항제2호의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서 신청년도의 직전년도 연간 수산종자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간 수산종자 판매액의 미만인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인

② 단일 어가가 제1항 각 호에 복수로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요건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

<신 설>

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
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
외한다.

제11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
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8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어
가 직접지불금은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표 4에 따른 그 밖에 준
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한
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
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
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해당
어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
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2. 제11조의2제1항의 제3호 또는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해당 어업신고를 한 어촌지역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일 것(어촌지역 거주기간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6과 같다.

④ 영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허가어선의 전체 톤수 합계가 5톤 이상인 경우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어업총수입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총수입 이상인 경우

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

<신 설>

요건에 관한 의무이행, 어가단 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4(어선의 범위)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허가를 가진 어선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3.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1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법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표 7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u>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6과 같다.</u> ③ <u>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의무이행, 어선원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u>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지방해양수산청</u>
<u><신설></u>	5. <u>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지방해양수산청</u>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④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서류의 열람(법 제19조제1호·제2호 및 이 <u>영 제14조제2호</u> 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 ----- ----- -- <u>영 제11조2제1항, 제11조5제1항, 제14조제2호</u> ----- -----
4.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법 제19조제1호·제2호 및 이 <u>영 제14조제2호</u> 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비치의 확인	4. ----- ----- -- <u>영 제11조2제1항, 제11조5제1항, 제14조제2호</u>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② ----- ----- ----- ----- ----- ----- ----- ----- ----- -----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
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
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의3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
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
인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의5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연 락 처	(044) 200 - 5452